

정부재정지원사업중복방지위원회규정

3-1-38

규정번호 3-1-38
제정일자 2026.3.23
최근개정
개정차수
관리부서 기획평가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 수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지원사업중복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적용하되, 용역과제, 위탁운영사업, 위탁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간 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
3. 사업별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조정을 권고할 경우 사업단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, 검토 결과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대학혁신본부장, AHR 센터장과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단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업무협조)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관련 교직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부서장 및 사업단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3-1-38 정부재정지원사업중복방지위원회규정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.